

學校保健에 관한 關係法規(拔萃)

1. 學校保健關係法規

가. 學校保健法

第1條 이 법은 學校 保健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 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 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身體檢査라 함은 體格檢査, 體質檢査 및 體能檢査를 말한다.

第3條(保健施設 등) 學校의 設立者는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校 保健과 身體檢査에 必要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第4條(學校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校舍 內의 空氣汚染, 換氣, 採光, 照明, 溫濕度, 食器, 食品, 飲料水, 上下水道, 便所, 汚物處理, 其他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하여야 한다.

第5條(同前)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敎育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校 環境 衛生淨化 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第6條(同前) ① 누구든지 學校 環境 衛生淨化 區域에서는 騒音, 振動, 惡臭 등의 發生으로 學生의 學習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는 行爲와 學校 保健衛生에 影響을 끼치는 非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必要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第7條(身體檢査 등) 學校의 長은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年 學生 및 敎職員의 身體檢査와 其他 保健管理에 必要한 計劃을 세워 이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監督廳이 報告하여야 한다.

第8條(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身體檢査의 結果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 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對하여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 시킬 수 있다.

第9條(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와 豫防 등을 爲하여 必要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第10條(同前) 國民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한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傳染病豫防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接種 完了 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第11條(同前)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身體檢査의 結果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對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長은 前項의 措置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助를 求할 수 있으며 保健所長은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第12條(同前) 國民學校 兒童에 대하여는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給食을 實施한다.

第13條(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疾病의 治療 勤務條件의 改善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4條(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 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에 休業을 命할 수 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第15條(學校醫 學校藥師 및 養護敎師)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 學校醫(齒科醫를 포함한다) 學校藥師 및 養護敎師를 둔다.

第16條(保健機構의 設置 등) 서울特別市, 釜山

市 및 道教育委員會와 市郡의 教育長 所屬下에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 保健管理에 必要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以下 省略)

나. 學校保健法施行令(개정 1969. 11. 25)
(大統領令 第4311號)
2次 改正 1974. 7. 11 大統領令 第7195號

- 第1條(目的) 이 令은 學校保健法(以下 “法”이라 한다)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定義) 이 令에서 “學校”라 함은 教育法 第81條에 規定한 各 學校를 말한다.
- 第3條(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① 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가 設定하는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以下 “淨化區域”이라 한다)은 學校로부터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市에 있어서는 300m까지의 地域, 其他에 있어서는 200m까지의 地域으로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가 淨化區域을 設定할 때에는 미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 ③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가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淨化區域을 設定한 때에는 그 設定 日字와 設定區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 第4條(淨化區域 안에서 禁止行爲 등)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淨化區域 안에서 學習에 支障이 되는 行爲, 學校 保健衛生에 影響을 끼치는 非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의 범위는 學校 保健委員會의 審의를 거쳐 文敎部令으로 定한다.
- 第5條(淨化의 要請 및 措置) ①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는 前條에 規定된 行爲 또한 施設에 대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道知事에게 法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道知事는 이에 關하여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6月 以內에 이를 處理하

고 이를 當該 教育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6條(學校醫,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 ①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다음과 같이 學校醫(齒科醫를 포함한다. 以下 같다),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

- ① 18學級 以上の 國民學校에는 學校醫 1人, 學校藥師 1人 및 養護教師 1人을 두고 18學級 미만의 國民學校에는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中 1人과 養護教師 1人을 둔다.
- ② 9學級 以上인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學校醫 1人, 學校藥師 1人 및 養護教師 1人을 두고 9學級 미만의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中 1人과 養護教師 1人을 둔다.
- ③ 大學(大學校에 있어서는 單科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및 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에는 學校醫 1人 및 學校藥師 1人을 둔다.
- ④ 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및 各 中學校에도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該當 學校에 準하여 學校醫,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醫 學校藥師는 各各 그 免許가 있는 者 中에서 學校長이 위촉한다.

第12條(協助要請) 文敎部長官은 學校 保健 衛生에 關한 非營利法人, 非營利 醫療기관이나 國公立 保健의료기관에 대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 保護,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協助을 要請할 수 있다.

以下 省略

다. 學校保健法施行規則(개정 1970. 9. 14)
(문교부령 제219호)
2차 개정 1974. 1. 24 문교부령 제333호

- 제1조(목적) 이 令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 1호를 제외한 시설 및 행위로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당해 자치단체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또는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① 공해 방지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시설.
-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3조, 제 104조, 제 105조,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장소.
- ③ 극장, 도살장, 화장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압축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④ 오물청소법 및 동 부속법령의 규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 오물매립장, 오물전개소각장 쓰레기 종말처리장 및 분뇨종말 처리장.
- ⑤ 공중목욕장 중 휴게실 및 터키장
- ⑥ 폐수처리장 및 화제장
- ⑦ 전염병원, 전염병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 ⑧ 노점, 행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학습 또는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행위.

라. 學校身體檢査規定

(1969. 7. 19 문교부령 제 241호 한글화)
(4차 개정 1974. 4. 23 문교부령 제 337호)

(省 略)

마. 學校保健關係 職員의 職務에 關한 規則

(1974. 6. 21 문교부)
(훈령 제 266호)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 규칙은 각급 학교 보건관계 직원의 직무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각급 학교 보건관계 직원이라 함은 교직원 중 ① 학교장 ② 체육(주임)교사 ③ 양호교사 ④ 학급 담임교사와 ① 학교의(첫과 의사 포함) ② 학교약사를 말한다.

제 2장 교내 보건관계 직원의 직무

제 3조 학교장의 보건에 관한 직무

- ① 학교 보건관리를 통괄하고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한다.
- ② 학교 보건에 관한 법령 지시 등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그 실천을 지도 감독한다.
- ③ 학교 보건계획 수립을 지도 감독한다.

제 4조 체육(주임)교사의 보건에 관한 직무

- ① 학교의 연간, 월간,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② 학교의 연간 보건 계획과 교육과정령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거 학생의 보건교육지도 내용을 작성한다.
- ③ 교내의 보건 교육 지도를 담당(관장)한다.
- ④ 건강생활의 유지와 보건교육에 관하여 일반 교사에게 지도 조언한다.
- ⑤ 학교 보건관계 직원 간의 연락 조정을 도모한다.

제 5조 양호교사의 직무

- ① 학교 보건관리 계획의 수립을 보조한다.
- ②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및 개선에 유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조언하여 환경위생 검사에 협력한다.
- ③ 학교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과 그 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조언하고 음식물의 영양과 위생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한다.
- ④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의 준비와 그 실시를 보조한다.
- ⑤ 학교와의 지도하에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를 담당한다.
- ⑥ 교내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사고자의 구급간호와 조치를 담당한다.
- ⑦ 교내에서 실시하는 기생충 구제, 결핵검진, 구강검사, 신체검사 등의 보건관리를 담당한다.
- ⑧ 학교 환경정화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실시를 보조한다.
- ⑩ 신체허약 학생에 관한 보건지도를 담당한다.
- ⑪ 학교 급식의 유지 개선을 담당한다.
- ⑫ 필요에 따라 학생의 가정방문을 행하고 보

전지도에 필요한 지도 조연을 할 수 있다.

- ⑫ 학교 담임교사 및 체육주임교사의 보건교육에 협력한다.
- ⑬ 학교 양호실의 설비, 비품의 정비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기구, 약품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 ⑭ 학교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기록 등을 확보 정비한다.
- ⑮ 기타 학교 보건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6조 학교 담임교사의 보건에 관한 직무

학교 담임교사는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학교 보건위생 관리 추진의 기초적 담당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 ① 학생의 건강유지 증진에 유의한다.
- ② 학생의 발육, 건강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적절한 보건지도를 행하며 질병 이상을 발견시는 건강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③ 학교의 보건계획 수립에 조언한다.
- ④ 학교의 보건계획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협력을 구한다.
- ⑤ 교실 등의 청결하기, 채광, 조명, 보온 등 환경위생의 유지 개선에 노력하고 학생의 신체, 의복의 청결검사를 행한다.
- ⑥ 신체검사의 준비와 실시 후의 조치에 협력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필요한 협력을 얻도록 한다.

제 3장 교외 보건관계 직원의 직무

제 7조 학교의(치과의사 포함)의 직무

- ①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도 조언한다.
- ②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약사와 협력하여 지도 조언한다.
- ③ 매년 정기적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진단(치아검사 포함) 한다.
- ④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치아질병 포함) 및 보건지도를 행한다.
- 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치아질병 포함)에 응한다.

⑥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지도 조언을 행하고 학교 내의 전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 처치를 행한다.

⑦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처치를 행한다.

⑧ 기타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지도를 행한다.

제 8조 학교 약사의 직무

①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도 조언한다.

② 학교 환경위생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다음 사항을 행한다.

㉠ 학교 음료수 및 용수의 수질검사

㉡ 학교 내의 공기의 검사와 난방 및 환기에 관한 검사

㉢ 학교의 채광 및 조명도 검사

㉣ 학교 주변의 분진검사

㉤ 변소 기타 교내의 소독과 구충구서작업

㉥ 학교 급식용 식품 및 기구의 위생검사

③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독물, 극물과 보건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 조언을 행하고 그 필요에 따라 시험 검사 또는 감정을 행할 수 있다.

④ 학교 약사가 전항의 직무를 행한 후에는 그 상황의 개요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지도를 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7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教育法

(1949. 12. 31 法律 第86號)

19次 改正 1974. 12. 24 法律 第2710號

가. 教育方針에 의한 規定

(1) 教育법 제 2조에 前條(제 1조 教育)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방법을 세운다.

(가)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기풍을 가지게 한다. (이하 생략)

(2) 教育법 제 94조 國民학교는 前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가) ②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토록 한다.

(3) 교육법 제101조에 중등교육은 前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가) ④ 신체를 양호 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이하 생략)

(4) 교육법 제105조에 고등학교 교육은 前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가) ③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 (이하 생략)

나. 건강증진을 위한 규정

(1) 교육법 제89조에 학교는 학생원아와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체 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다. 양호교사를 두는 법적근거(교육법)

(1) 교육법 시행령 중에 양호교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법 시행령 제38조에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촌에 있어서는 18학급 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들 수 있다.

(나) 교육법 시행령 제40조에 ① 중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1인 반 이상의 비율로 이를 증치한다.

② 전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

③ 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사라 칭한다)와 양호교사는 전 2항의 정원 외에 이를 들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①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증치한다.

② 전항의 교사 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

③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전 각항의 정원 외에 이를 들 수 있다.

학 교 보 건

(通卷 第2號)

1976年 6月 30日 發行

登錄番號 바-582

登錄日字 1975年 9月 1日

發行人：李 元 雨

編輯人：社團 韓國學校保健協會

發行所：서울特別市 城北區 東小門洞 1街 29

電話 ㉠ 3872

印刷所：天豐印刷株式會社

<非 賣 品>